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

2018. 2.

우 수 장 학 부



목 차

I. 개요	1
II. 주요 사업내용	2
III. 신규장학생 선발	5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8
V. 기타	28
VI. 2018년도 추진일정	33
참고 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36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37
3. 신청인동의서	42
4.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48
5.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49

'18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유형별 선발비율	○ 수시:수능 = 70%:30% ※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15.4월)	○ 수시:수능 = 74%:26%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16.4월)
고교우수자 선발개선	○ 우수학생 추천 권고 (성장가능성·우수성 고려)	○ 저소득층 추천 권고 (기존 성장가능성·우수성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고려)
대학배정 방식개선	○ 한학기 지원: 잔여예산 확인 (11월) 후 배정	○ 한학기 지원: 잔여예산 사전예측 (상반기) 후 조기 가배정(7월)
수시우수 배정개선	○ 최근 2년간 고교성적 충족자 수에 따라 선발인원 배정	○ 당해년도 고교성적 충족자 수에 따라 선발인원 배정
소외계층 지원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18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지원
전과제한 폐지	○ 이공계열 내 전과 1회 허용	○ 이공계열 내 전과 제한 폐지
환수 심의기능 활성화	○ 환수위원회 심의기능 제한적 활용	○ 환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I 개요

1. 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2. 추진경과

- 20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20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기술재단)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 2009. 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기술재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20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3.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과학기술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 시·도교육청: 해당 지역 우수 인재 심사 및 추천 등 수행

II 주요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지원 인원 및 예산: 9,475명 내외, 총 499억 원

사업명	예산	인원
신규장학생	85억 원	1,600명 내외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103억 원	1,750명 내외
과학기술전문사관	2억 원	25명 내외
계속장학생	309억 원	6,100명 내외
합 계	499억 원	9,475명 내외

※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선발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신규장학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
 -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 ※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 포함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기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가능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 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 단,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08~'09년도 선발된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생은 등록금의 50%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 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 단,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추천(2차) 마감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증빙자료 제출

- 생활비 수혜가 가능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학추천(2차) 마감일 내에 수급권을 득한 자로 한함
 - ※ 대학 추천(2차) 마감일 기준 1개월 전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단,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득한 일자가 마감일 이전임을 증빙하여야함)
- 재학중우수자 한 학기 지원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은 생활비 지원 불가
- 교재비: '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 위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 및 선발연도 장학금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Ⅲ 신규 장학생 선발

1. 공통사항

□ 선발 기본방향

- 입학 유형별 선발 비율(신입생 신규선발): 수시 74%, 수능 26%
 -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16.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수시우수, 수능우수, 2년지원, 한 학기 지원 유형)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특별추천) 대통령과학장학금 시·도교육감 추천자(지역추천제) 중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특별 선발함(최대 34명* 선발)
 - *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역추천자 중 34명 이내를 신규 선발 인원에 포함하여 특별추천 유형으로 선발하되, 선발절차를 생략하여 선발함
- (고교우수자) 2017년 고교우수자로 추천받은 학생 중 시·도교육청별 3순위 이내이면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최종 선발함(최대 51명)
 - ※ 단, 3순위 이내 추천자 중 신청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후보자(4순위, 신청자격 충족자)를 최종 선발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8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입학·재학 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 ※ 동일 대학이지만 소재지를 달리할 경우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권역 구분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수도권 이외 지역)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학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금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신청제외 대상

- '17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D·E등급 대학(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선발 제한)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기준일: '17.9.4.)
- ※ 단,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완전해제' 및 '일부 해제' 조치를 받은 대학은 선발 가능('16.9.5. 확정·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신입생 신규 선발

□ 선발규모: 1,600명 내외

구분	수시우수	수능우수	특별추천	고교우수자
선발인원 (수도:비수도)	1,121명 내외 (336명:785명)	394명 내외 (118명:276명)	34명 내외	51명 내외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 세부내용

① 수시 우수 유형

- 선발대상: '18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 배정기준: 대학별 당해 연도('18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수시 입학생(정원 외 포함) 중 고교 성적기준 충족자 수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교 성적기준 충족자 현황을 점검하여 대학 과실 등으로 배정인원을 초과 배정 받은 경우 제재조치 이행(차년도 인원배정 감원 처리)

- 고교 성적기준

구분	유형	성적 기준	이수단위 합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B학점 이상 과목	24단위 이상

-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 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 교육부 비 인가학교 및 외국계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적용, 단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적용 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수학Ⅰ 수학Ⅱ 동안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LP, AP포함)

-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과목명(예시)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I, 물리II, 화학 I, 화학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II 등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 I, 컴퓨터과학II,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 I, 정보과학II, 과제연구 I, 과제연구II, 원서감독, 워크숍, 기타 등

-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 상기 과목 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과학 관련 과목 인정
-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인정
- ※ UP 과목 등 성적기준: A이상 (성적 관련 증빙자료 보관)
-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기준 적용(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됨
- ※ 단,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배정 산식

배정인원 = (대학별 고교 성적기준 충족자 수/조사에 참여한 대학의 고교 성적기준 충족자 수 총합) × 수시우수유형 선발인원

* 고교 성적기준 충족자 수: 당해 연도('18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수시 입학생 중 고교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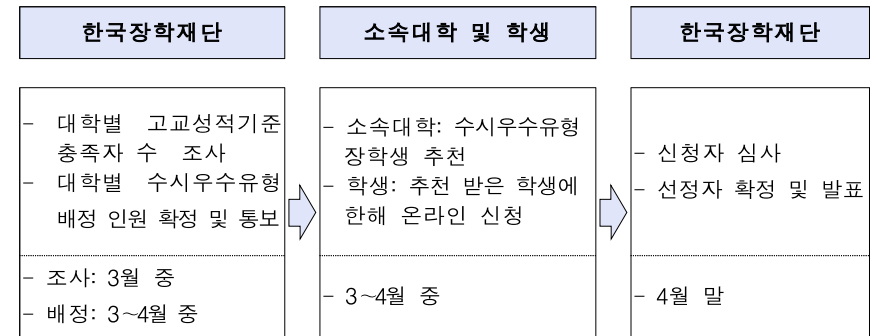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적용

- 선발방법: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되, '18년도 수시 전형 입학자 중 고교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중사 예정인 자로서 혁신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 *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7.12.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 (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 인원의 30% 수준)
- 사회공헌활동, 향후 사회 기여 및 환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절차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 고교 성적기준충족자 조사를 제출한 경우 배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정인원에 대한 선발이 미달하는 대학은 차년도 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수능 우수 유형

- 선발대상: '18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18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자격: '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가·나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II)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II)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선발방법: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수학·과학탐구)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 수학 가/나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수능우수유형 세부 선발기준>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보유자에 한하여 수학 가/나 유형 및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평균)의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200점)	- 예시: 수학 A/B형 백분위 100점, 과학탐구 1과목 98점, 2과목 95점인 경우 백분위 합산 $100 + \frac{(98+95)}{2} = 196.5$ 점(200점 만점)
(2) 위 기준 (1)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300점)	- 예시: 수학 가/나 유형 백분위 100점, 과학탐구 1과목 98점, 2과목 95점인 경우 백분위 합산 $100+98+95 = 293$ 점(300점 만점)
(3) 위 기준 (2)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영역별 표준점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예시: 수학 가/나 유형 표준점수 139점, 과학탐구 1과목 71점, 2과목 75점인 경우 표준 점수 합산 $139+71+75 = 285$ 점
(4) 위 기준 (3)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학 가/나 유형 표준점수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5) 위 기준 (4)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 표준점수 합산 점수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6) 위 기준 (5)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학 가/나 유형 및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평균) 평균등급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예시: 수학 가/나 유형 1등급, 과학탐구 1과목(1등급), 2과목(2등급)인 경우 평균 등급은 $\frac{1 + \frac{(1+2)}{2}}{2} = 1.25$ 등급
※ 위 기준은 학생이 응시한 과목 및 유형(가·나 유형)의 성적을 적용함	
※ 비율 관계상 선발가능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사하며, 상기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 인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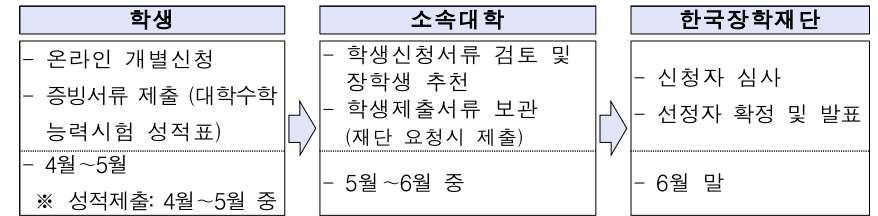
-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가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나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수학 나형 최대 선발 가능인원은 총 선발인원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

$$\text{수학 나형 최대 선발 가능 인원} = (\text{수학 나형 응시 신청자/전체 신청자}) \times \text{수능우수 유형 선발 인원}$$

- 대학 균형 선발 비율(20%) 등에 따라 2순위 대상자 선발 가능

○ 선발절차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자 본인이 소속대학으로 증빙서류를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재학중우수자 선발

□ 선발규모

구 분	유형		
	2년 지원	한 학기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선발인원 (수도:비수도)	1,750명 내외 (525명:1,225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사업의 잔여예산 범위 내	25명 내외

-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최종 선발규모는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선발 세부내용

① 2년 지원 유형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 (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 선발 제외 대상

- 가. 2018년도 1학기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 나. 2018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 (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다. 2018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배정기준: 대학별 '16년 신규 선발 장학생(수능, 수시, 특별추천) 자격 유지율 및 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배정산식

- 1차 배정 인원: (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의 총합) × 1차 배정 가능 인원
- 2차 배정 인원: (대학별 '16년 신규 선발인원/대학별 '16년 신규 선발인원 총합) × ('18년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인원 - 1차 배정 인원)
- * 대학별 신규 장학생 자격 유지율 = 대학별 '16년 신규 선발인원 중 자격 유지자 수 / 대학별 '16년 신규 선발인원의 총합
- ** 1차 배정 가능 인원 = ('16년 신규 선발인원 중 영구탈락자/'16년 신규 선발인원) × '18년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인원
- ※ 대학별 1차 배정인원은 대학별 '16년도 신규 선발인원의 2배 이내로 상한선 설정
- ※ 배정산식은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적용

○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중사 예정인 자로서 혁신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7.12,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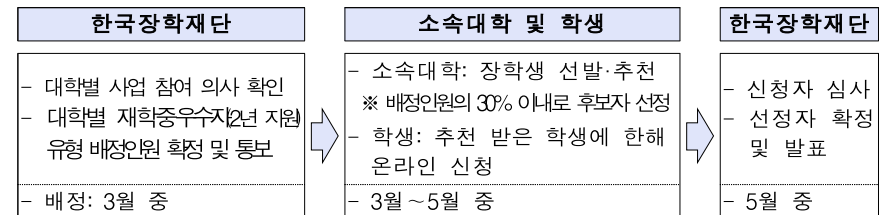
-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 (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 인원의 30% 수준)
-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운영 학과 소속 학생 선발 권고(선발인원 중 15% 수준)
- 사회공헌활동, 향후 사회 기여 및 환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 기준)
- 이수 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관련 상세기준은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참고

○ 선발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대체 선발) '18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신규 선발자 중 자격 상실자(계속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선정된 후보자 중 대체 선발

-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이 소속 대학의 타 학생을 대체 선발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선발자격(선발 당시의 성적기준 등) 및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18년 1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단, '18년 1학기 휴학·P/F과목만 이수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총평균 성적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18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정규학기) 지원: 4년제 최대 3개 학기, 5년제 최대 4개 학기

② 한 학기 지원 유형

- 선발규모: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장학금 반환(학기 중 휴학 등), 지원 일시중단(성적미달, 휴학 등)으로 발생한 예산 활용
 - ※ 잔여예산 규모, 동점자 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이력이 있는 자는 선발 가능
 -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지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
 - 선발 제외 대상

가. 2018년도 1학기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나. 2018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 (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다. 2018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배정기준: 대학별 '18년 신규 장학생(수능, 수시, 특별추천, 고교우수)의 선발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인원 배정 산정
- 배정산식

배정인원 = (대학별 '18년 신규 선발인원 / '18년 신규 선발 전체인원) × (잔여예산 / 평균 등록금)
 * '18년도 1학기 계속장학생 평균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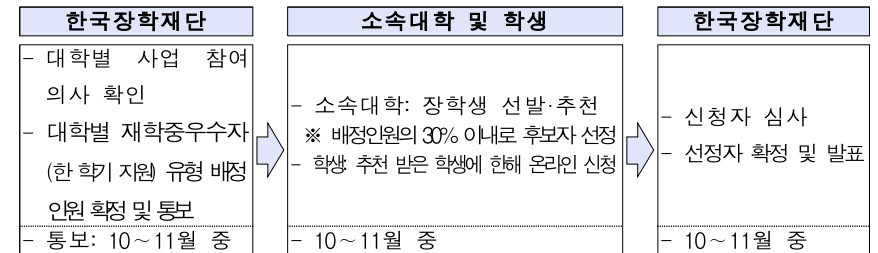
-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중사 예정인 자로서 혁신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17.12.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 (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 인원의 30% 수준)
-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운영 학과 소속 학생 선발 권고(선발인원 중 15% 수준)
- 사회공헌활동, 향후 사회 기여 및 환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발자격('18년도 정규 1학기 취득 성적)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 33이상/43만점 기준
 - ※ 휴학, Pass/Fail 과목 이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18년도 1학기 성적 미산출 학생은 제외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 ※ 성적 및 이수학점 관련 상세기준은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참고

○ 선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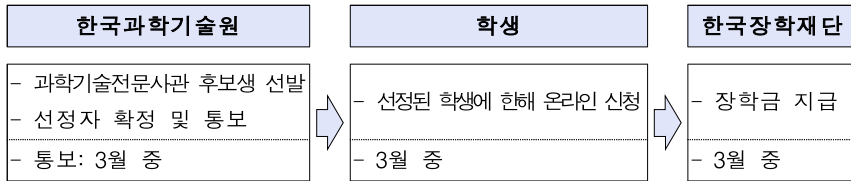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1차 선발 후 반환, 배정인원 선발 미달 대학 발생 등으로 잔여예산 추가 발생 시 기 산정된 배정비율 통해 2차 인원 배정 및 선발 가능 (단, 선발 미달 대학은 2차 배정에서 제외)

③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목적: “교육-군복무-창업”을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금 지원
- 지원규모: 25명 내외
-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자
 - ※ 계속지원기준성적, 이수학적, 학적변동 등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 단, 계속지원기준 1회 미달 시 지원 중단, 2회 미달 시 영구 탈락되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자격 포기 시 후보생 자격으로 수혜 받은 장학금 모두 반환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전문역량개발비(학기 당 250만원)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전문역량개발비만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 생활비 추가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정규 4학기)

○ 장학생 관리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기준 준용
- 기존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는 중간평가(2+2) 제외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장학금”으로 전환·관리

○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의 복무기간은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

4. 고교 우수자('19년 지원예정) 선발

- 목적: 고등학교 재학부터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진학을 유도
- 선발규모: 51명 내외
- 선발대상: '18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
 - ※ '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19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진학 예정인 자(고교 조기졸업으로 '19년 대학 진학 예정자도 선발 가능)

- 선발방법: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고교 3학년 학생 중에서 '19년도 국내 4년제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입학 예정자 68명 추천(각 4명)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68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통해 51명(지역별 3명)을 최종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은 17명 중 적격자는 후보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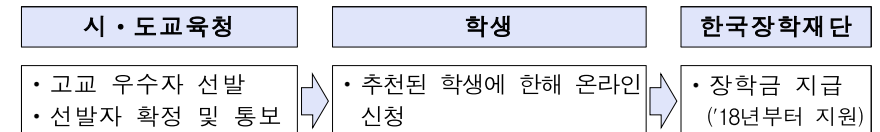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별 이공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우수성 및 저소득층* 여부 등을 고려한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정(지역별 추천자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우선선발을 권고

- 최소 성적 기준은 수시우수유형 고교 성적기준 준용(단, 이수단위 합계는 20단위 이상 적용)

- 이공계열 전공 미선택 등으로 선발요건이 미충족하거나 장학금 수혜 전에 자격을 포기할 경우 지역별 후보자 선정 가능

□ 선발절차



- 지원내용: 신규(수시, 수능) 장학생에 준하여 지원기간, 금액, 계속수혜기준 등

※ '19년도 대학 미 입학 및 비이공계 학과(부) 입학 시 지원 불가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등에 따라 '19년도에 선발 제외되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 불가

IV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1. 계속지원 및 중간평가(2+2) 기준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8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18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계속지원기준

- 성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07년까지 선발된 저소득층 장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3.25이상/4.5만점(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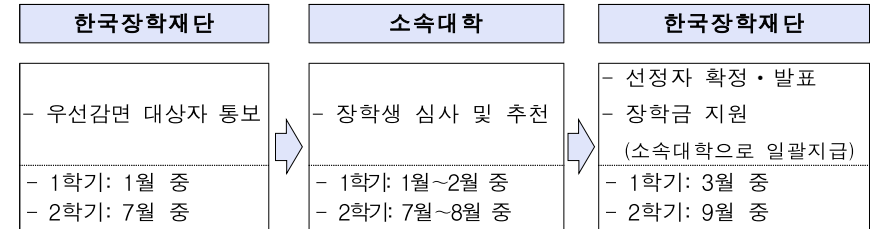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학사규정에 의함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참조

○ 추천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2+2)기준

- 평가대상: '08년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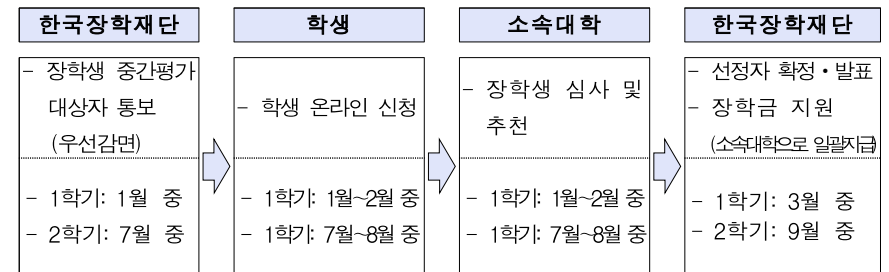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의 1/2에 해당하면 중간평가대상자로 간주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 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해야 함

- 성적: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평균 평점이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총평균 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간평가 통과

- 이수학점: 2년 동안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해야 함('10년도 이후 선발장학생)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재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2.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지급 절차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회차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금 수혜(학생)
 -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 등록금 우선 감면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수혜대상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 장학생의 등록금을 우선감면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 상에 장학사업명을 명기
- 등록금 우선 감면 제외
 - 장학생 선발·확정이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후 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이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우선감면 제외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학생 본인 통장에 송금(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 상환(재단 내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 기타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이공계 지역대('08~'09년 선발)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이연 가능

- ※ 생활비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전액 반환
- ※ 단,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 발송)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
-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국가장학금 I 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 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
 - ※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3. 성적 관련 기준

□ 성적 산출 기준(2017-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

구분	유의사항
성적 (백분위 및 평균평점)	1) 직전학기: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평균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단, 개인별 적용 및 일부 과목만 반영 불가(해당 계절학기 성적 전체 반영) 예시1) 학칙 상 계절학기를 포함하며, 계절학기 이수자가 A,B 인 경우 ⇨ A,B 모두 계절학기 포함(A 또는 B만 포함 불가) 예시2)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 인 경우 ⇨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백분위점수 86.9점인 경우 86으로 처리(계속지원기준 미충족)

이수학점	<p>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p>2)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p>
직전학기 성적산출 불가 시	<p>1)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p>2)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예도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 예시) '16-2학기에 전체 Pass/Non Pass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학점을 15학점 인정받은 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16/2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p>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할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되, 성적취득연도학기에도 해당 학기를 명시 예시) '17-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16-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16-1학기의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16/1

4.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전공 변경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는 전공학과(부) 변경 가능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편입 등 소속 학교의 변경은 인정 불가
 -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중간평가(2+2) 전에 소속학과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고, 중간평가(2+2) 후 학제가 변경되는 경우 중간평가(2+2)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로 선발된 장학생이 진급 시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등은 전공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단, 최소 이수학점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교환학생의 학적상태 입력 방법

-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017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017-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2) 교환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심사
 - 직전학기가 “재학(교환)”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미보유 또는 산출 전 일 수 있으므로, 총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심사

- 단, 직전학기의 학사정보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 기준 적용 가능 예시) ('18-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17-2학기 교환학생으로, 해당 학기 성적이 산출 전. 보유한 성적이 없어 '17-1학기의 성적을 입력
 - ☞ ('17-2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학적상태: 재학(교환)였던 경우, 총평균성적 기준으로 '18-1학기 계속지원기준 심사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와 동일)

3) 주의사항

- 해외 파견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 요청 (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내에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불가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학·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초과학기

-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유급

- 유급(특정 연도/학기 성적을 전체 삭제 등)하고 해당 연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유급)”으로 입력
- 단, 유급하여 다시 이수하는 학기에도 계속지원기준에 대해 심사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 미달 횟수에 포함함
- ※ 예시: 2016년에 2학년 이수 후 1년 유급하여 2017년에 2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2017-1,2학기를 모두 재학(유급)으로 업로드

□ 휴학

-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휴학”으로 입력

□ 자퇴·제적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탈락)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자퇴” 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 성적 및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함

5.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중복 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 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6.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자격만 영구탈락 되는 경우

-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 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시
-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및 장학금 반환되는 경우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V 기타

1. 장학증서 및 수혜증명서 발급

□ '18년도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 장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 수능우수, 수시우수, 특별추천,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고교우수자

□ 장학생의 신청에 따라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한국과학기술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

2.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11.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환수대상: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12년 이후 선발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부터 해당

○ 수학중단: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의무종사: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은 졸업 후 이공계 산·학·연에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일 산정

$$\text{총 의무종사 기간} = \text{장학금 지급횟수} \times 6(\text{개월}) \times 30(\text{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학금 환수
- 이공계 전공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中等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left(\begin{array}{cc} \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text{지급한 장학금 중} \\ \text{지급한 연구장려금} & \text{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남은 의무종사일}}{\text{총 의무종사일}}$

-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 유지(연락처 변경 시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프로그램 등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에 협조

4. 대학 현장 모니터링

- 대학 모니터링: 재단에서 대학을 선정하여 시행
- 점검 내용
 -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유무 및 준수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 여부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장학 상품명)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실태점검 결과 장학생 부적격자가 도출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 하고 해당 대학은 매회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인 감독 실시

5. 대학의무사항

- 대학은 장학생 자체선발 및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 대학은 장학생 추천·선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또한 재단에 성실히 제공
- 대학은 필요시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 대학은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10년간 보존

6. 기타사항

- 동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 문의 및 응답
 -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우수 장학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 고객상담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VI 2018년도 추진일정

1. 신입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18. 2월~3월
대학신청	○ 대학별 고교 성적증족자 제출(대학신청) ○ 대학별 수시우수유형 배정인원 통보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18. 3월~4월
선발 및 신청접수 (수시우수유형)	○ 수시우수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 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소속대학 학생	‘18. 3월~5월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수시우수전형 장학생 선정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3월~5월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5월 중
신청접수 (수능우수유형)	○ 수능우수유형 온라인 신청 ○ 소속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	학생	‘18. 4월~5월
선정평가	○ 온라인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확인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학생 신청서류 요청 시 제출)	소속대학	‘18. 5월 중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수능우수전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5월 중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6월 중
결과보고	○ 선정인원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6월 중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선정과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2. 재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18. 2월~3월
배정인원 통보	○ 대학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한국장학재단	'18. 3월 중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2원지원 유형)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소속대학 학생	'18. 3월~5월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3월~5월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5월 중
선발 및 신청접수 (과학기술전문 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및 통보 ○ 선발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소속대학 학생	'18. 3월 중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3월 중
배정인원 통보	○ 대학별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2차 배정인원 통보	한국장학재단	'18. 9월 중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한학기지원 유형)	○ 가배정 인원 통보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및 추천	소속대학 학생	'18. 7월~11월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재학중우수자(한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11월 중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12월 중
결과보고	○ 선정인원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8.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선정과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계속장학생 지원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공고 ○ 장학생 신청안내(학생 · 대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18. 1월 ~ 2월	'18.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18. 1월 ~ 2월	'18. 7월 중
신청접수 (2+2유형)	○ 장학생 중간평가(2+2)유형 해당 장학생의 장학금 온라인 신청	2+2 유형 심사 대상자	'18. 1월 ~ 2월	'18. 7월 ~ 8월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 대학 추천	소속 대학	'18. 1월 ~ 2월	'18. 7월 ~ 8월
우선감면 처리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18. 1월 ~ 2월	'18. 7월 ~ 8월
심사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8. 2월 중	'18. 7월 ~ 8월
지원	○ 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18. 2월~ 3월	'18. 8월 ~ 9월
결과보고	○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 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18. 8월 중	'18.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선정과정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참고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18년
성적 우수 장학생	B이상 (300이상/4.5만점 240이상/4.3만점)	B이상 (300이상/4.5만점 270이상/4.3만점)	B ⁺ 이상 (3250이상/4.5만점 300이상/4.3만점)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대 학 별 최 소 이수 학 점				12학점 이상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20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저소득 장학생 (05~07 선발자)	2.0이상 /4.5만점	2.5이상 /4.5만점	300이상/4.5만점 270이상/4.3만점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3250이상/4.5만점 30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2점 이상	3.25이상/4.5만점 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대 학 별 최 소 이수 학 점				12학점 이상단,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20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중간 평가 (2+2)	-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B ⁺ 이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10년도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총 2년 동안 취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 이수 학점의 40% 이상 충족			
교재비	-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교재비 지원은 '09년도 1학기까지 시행) - ~ 2005년 이전 선발장학생은 선발 당시 교재비 대상자이면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교재비 추가 지원 - 2006~2008년 선발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4.0/4.5만점, 3.7/4.3만점('08.1학기 성적부터 적용, '07년은 3.8/4.3만점)일 경우 교재비 지급							
생활비	2008년도 신규장학생부터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해서 생활비 지원							

※ 성적적용 시점

- '07년도 성적기준은 '07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1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2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2년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13~'18년도 성적기준은 '13년도 1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
- 중간평가제도 성적기준은 평가년도의 성적 적용

참고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를(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중사, 환수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
|---------|---|
| 수집·이용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
|---------|---|

	<p>연구장려금의 환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수립 및 환수 등 법령상 의무이행 등 <p>[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차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 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 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종료일(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까지를 의미함</p>
보유,이용 기간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종료일(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까지를 의미함</p>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보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를 거부할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p>

경우의 불이익	<p>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차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p>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제정,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근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재단 기부장학금 등) 업무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재단은 위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외부 연계 채무자 이차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차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저소득층 해외어학연수 지원사업(파란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p>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용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지역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 <div data-bbox="250 1045 999 109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항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제공·조회 동의 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p>*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p>	<p>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감경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p>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p>	<p>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쉰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가. 본인은 입학 이후 2년(1~2 학년)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 및 장학생 중간평가(2+2제도) 통과 후 성적기준(3학년 이후의 성적으로 산정) 미달 1회, 2년지원유형 선정 후 성적미달 1회 시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 나. 본인은 재단의 지식봉사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학적·등록(상태), 제한대학, 특별추천, 소득구간(분위), 연령, 대출제한, 해당학과 등) 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4.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본인의 부모로부터 받는 부모 소속기관의 등록금지원을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미래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공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p>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p> <p>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p> <p>③ ①, 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p> <p>※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p>

5.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가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이공계지역대, 인문사회계)으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고객센터·홍보 등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국가우수장학생 커뮤니티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7. 연구장려금 환수 등에 대한 동의(2012년부터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신규 선발된 학생에 해당)

본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장려금의 중지·환수 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 내용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8.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서약

이공계열 진로 설정 및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 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지원하며 장학생으로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졸업 후 이공계열로의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2. 졸업 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 및 의무종사 보고 등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등에 의거 한 국가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9.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지역대)>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기준

- ①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 ②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 ③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④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⑤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 ⑥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⑦ 과학기술전문사관 유형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시
- ⑧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함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⑦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10. 연구장려금 중지 및 환수 세부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지역대)>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②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③ 장학금을 받은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장학금 환수
※ 환수액 산정: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의무종사기간)
※ 의무종사기간: 수급자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12년 선정 장학생부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장학생은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총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①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②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장학생

□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상환 약정서를 제출하고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연구장려금을 상환하여야 함

- ① 일시상환: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
- ② 분할상환: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 90일 이상 미상환 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 환수자 지정

□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③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④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4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포기 확인서

선정연도	년도	장학금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예: 94년1월1일 남자 940101-1)		
소속(대학교)	대학교	학부(계열)	학과	학번	
연락처(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포기 사유					
포기연도/ 학기					
<p>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해 장학금 지원을 포기합니다. 이후 장학금 포기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참고5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계획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제출한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는 장학생 대학 추천 시 참고자료로 활용

1.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2. 대학 생활 중 사회공헌 등 활동 계획

※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 받은 후, 체득한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자세히 기술하시오.
 - 대학 재학 중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을 자세히 기술하여 사회 공헌 및 기여에 대한 의지 표명. 예) 사회봉사, 기부 등

3. 사회 기여·환원 계획

※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 생애 전반에 걸쳐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 기여 및 환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시오.(본인의 전공(예정)분야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무방함)

20 년 월 일

성명: (인)